

2005. 3.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110회 임시회에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 임 1. 발의의원 서명부 1부

2.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부

발의자 : 이동수 의원 (인) 81
외 3인 81

(찬성자 서명 별첨)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발의
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이종수	이종수	
우경상	우경상	
이재환	이재환	
金南元	金南元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의안번호	965
------	-----

발의년월일 : 2005. 3.
발의자 : 이동수 의원외3인

1. 제안이유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게 표창 및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밝고 정의가 앞서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2조(의인의 정의)

“의인”이라 함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자로 산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기타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로 규정

○ 제4조(표 창)

의인이 보여준 행위로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를 받은 자를 제외한 시민에게 의인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제5조(장제지원)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사자와 의인에 대하여는 시민의 장으로 장제를 치를 수 있으며 장제비를 부담할 수 있다.

○ 제6조(보상금)

시장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 신체·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붙임 :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게 표창 및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밝고 정의가 앞서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인”이라 함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기타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에 준하는 경우로 의사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와 기타 의로운 행동으로 입은 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표창) 시장은 의인이 보여준 행위로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진의 수여를 받은 자를 제외한 시민에게 의인 표창을 할 수 있다.

제5조(장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사자와 의인에 대하여는 시민의 장으로 장제를 치를 수 있으며 장제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시장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 신체·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의인에 대하여 표창, 장제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록보존) 의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30>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이라 함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하여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하여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하여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제4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①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6.12.30>

②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신청 및 보고) ①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거나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제6조 (영예의 존중) 국가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9.1.21>

1.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당시의 국가유공자동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 월액에 240을 곱한 금액

2. 의상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최고 100분의 100 최저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8조 (보상금 지급순위)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태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의료급여<개정 2001.5.24>) ①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01.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의사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1.5.24>

제10조 (자녀의 교육보호) 의사자 및 의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1999.9.7>

제11조 (취업보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제12조 (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개정 1999.9.7>

제13조 (보호기관)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1996.12.30>

제14조 (보상금등의 신청기간) 보상금 및 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 (보상금등의 환수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 및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한다.<개정 1996.12.3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6.12.30>

부 록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